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23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류성걸・김은혜・金炳旭

정운천 • 박덕흠 • 김예지

주호영 · 강대식 · 박대수

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공공단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필요한 선거인명부·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의 처벌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며, 금품제공행위의 처벌에사각지대가 있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현재 임의위탁선 거로서 새마을금고가 선거관리의 위탁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 관련 금품제공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탁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 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여 선거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 정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
- 나. 예비후보자 제도를 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 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로 까지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안 제24조의2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등).
- 다. 장애인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 라. 위탁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조합원·회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제30조의2 신설 등).

- 마.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함(안 제30조의3 신설).
- 바. 위탁단체에 가입시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안 제58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중앙 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을 "중소기업중앙회 및"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를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후보자"를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 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제30조까지"를 "제30조까지와 제30조의2·제30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 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1호에 따 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으로,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 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제30조의2"를 "제 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를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후보자는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를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명을 말한다) 및 제24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활동보조인의 경우 제2호에 따른 방법에 한정한다)으로"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인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활동 보조를 위하여 선거인(위탁단체 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25조제5항 중 "선거인"을 "후보자 또는 선거인"으로 한다.

제27조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와 제24조의3에 따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보자"를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명을 말

한다. 이하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를 "후보자와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활동보조인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위탁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위탁단체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회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사항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담"이란 1명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명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사회자를 통하여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청할 후보자의 성명, 대담 또

- 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 ⑤ 대담·토론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대 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위탁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이를 주최하는 위탁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 ⑦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위탁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 ⑧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 표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공개행사에서의 후보자의 소견 발표) ①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소견을 발표하려는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종전의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로,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를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중앙회장선거"로, "조합운영"을 "조합 또는 금고 운영"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을 "조합장·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으로 한다.

제5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 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3. 위탁단체에 가입시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4. 제3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나 사회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본문 중 "후보자가 아닌 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예비후보자는"을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활동보조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장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의4제4항"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②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3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 1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단체를 말한다. | |
| 가. 「농업협동조합법」, | 가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 |
|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 <u>중앙회, 「산</u> |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 | 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 중}- <u>남</u> | <u>및</u> 「새마을금고법」에 따 |
| | 른 금고와 중앙회 |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나 |
| 에 따른 <u>중소기업중앙회,</u> | <u>중소기업중앙회</u> |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 민 <u>ㅈ</u> |
|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 |
|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 |
| 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 | |
| 원회 | |
| 다.•라. (생 략) | 다.•라. (현행과 같음) |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 |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 |
| 법) ① 후보자가 제25조부터 | 법) ① <u>제25</u> 조부터 제30조의4 |
|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 까지의 규정에 따라 |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 앙회장선거의 <u>후보자</u>가 선거 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제28 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 2. <u>제30조의2</u>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 우
-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 ② |
|---------------------------|
| |
| |
| |
| |
| |
| 1 |
| <u>후보자와 그</u> |
|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
|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
| 중에서 지정한 1명을 말한 |
| 다) |
| <u> </u> |
| 2 제30주의4 |
| 2. 제30조의4 |
| 2. <u>제30조의4</u> |
| 2. 제30조의4 |
| |
| 2. <u>제30조의4</u> 3 |
| |
| |
| 3 |
| 3 |
| 3 |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u>조합</u> <u>장선거</u>: 제25조부터 <u>제30조까</u> 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2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 건: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u>「농업협동조합법」</u>,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 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및 「수산 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u>조합장선거</u>: 제25 조·제28조·제29조·제30조 및

| | <u>조합</u> |
|----|------------------------|
| | <u>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u> |
| |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회 |
| | 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
| | <u>이사장선거</u> <u>제3</u> |
| | 0조까지와 제30조의2·제30조 |
| | <u>의3</u> |
| 2. | |
| | |
| | |
| | |
| | |
| | 조합장선 |
| | 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 |
| | 조제5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 |
| | 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
| | 제30조의4 |
| | |
| 3.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 |
| | 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 |
| | 금고법 |
| | |
| | |
| | |
| | |
| | 마읔금고법 _ 제18조제5항제 |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 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 선거에 한정한다)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제24조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제24조 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다.

- ② ~ ⑥ (생 략)
- ⑦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⑧・⑨ (생략)

| <u>2호에</u> | 따라 | 대의 |] 원회 | 에서 | 선 |
|------------|------|----------|-------------|----|-----------|
| 출하는 | 는 이사 | <u> </u> | <u> 1</u> 거 | | |
| | | | | | |
| 제302 | 조의2부 | ·터 | 제30 | 조의 | <u>4까</u> |
| 지의 | 규정- | | | | |
| | | | | | |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 |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장선 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 기·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 선거-----

- ② ~ ⑥ (현행과 같음)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명 을 말한다) 및 제24조의3에 따 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활동보조인의 경 우 제2호에 따른 방법에 한정 한다)으로-----
- 1. 2. (현행과 같음)
- ⑧・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선거공보) ① ~ ④ (생 략)

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 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 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 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 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 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 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 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6) · (7) (생 략)

| 제24조의3(활동보조인) 「장애인 |
|----------------------|
|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 된 장애인으로서 중앙선거관리 |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
| 에 해당하는 후보자와 예비후 |
| 보자는 자신의 활동 보조를 위 |
| 하여 선거인(위탁단체의 임직 |
| 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1명의 |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
| 제25조(선거공보) ① ~ ④ (현행 |
| 과 같음) |
| ⑤ 후보자 또는 선거인 |
| |
| |
| |
| |
| |
|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 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와 제24조의3에 따른 후보자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 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u>후보자</u>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u>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u> <u>동영상 등은 제외한다)</u>메시 지를 전송하는 방법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거운동) ① <u>후보자</u>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1. <u>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u> <u>하는 인터넷 홈페이지</u>의 게 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 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 2. (생략)

|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 |
|-------------------------|
| <u>이라 한다)은</u> |
| |
|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
| 없는 경우 후보자가 그의 직계 |
| 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명을 |
| 말한다. 이하 제29조제1항 및 |
| 제30조에서 같다) |
| |
| |
| <u>.</u> |
| 1. (현행과 같음) |
| 2.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
| 포함한다) |
| |
|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
| 거운동) ① <u>후보자와 그 배우</u> |
| 자 |
| |
| <u>.</u> |
| 1. <u>인터넷 홈페이지</u> |
| |
| |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 2 |) ~ | _ | 4 | (현 | 행고 | 가 . | 같- | 음) | | | |
|----------|------------|----|---|----|----|-----|----------|----|----|----|---------|
| 제3(|)조 | (면 | 함 | 을 | 0] | 용현 | 한 | 선) | 거은 | 운동 | -) |
| <u>후</u> | 上上 | 자 | 와 | コ | 배 | 우기 | 사 | 및 | 활 | 동년 | <u></u> |
| 조 | <u>:</u> 인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 |

제30조의2(위탁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위탁단체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회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 체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 그 밖의 사항에 관한 후보 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대 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담"이란 1 명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사 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 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명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 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청할 후보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④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 대담·토론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위탁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 ⑥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이를 주최하는 위탁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위 탁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 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⑧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 표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공개행사에서의 후보 자의 소견 발표) ① 후보자(예 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위탁단체 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 하여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소견을 발표하려는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2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 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 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 투표일(제24조제3항제3호에 따 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 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 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 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 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

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 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선거·이사장선거----------제24조제3항제3호에 따 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른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중앙 회장선거-----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

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 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 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 ⑤ 「농업협동조합법」,「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u>조합</u> <u>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u> 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생 략) <신 설>

<신 설>

| <u>소합 또는 금고 운영</u> |
|-------------------------|
| |
| |
| |
| <u>.</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
| (현행과 같음) |
| 5 |
| |
| ~~~ 장·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
| 따른 조합장, 「새마을금고법」 |
| 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 |
| |
|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3. 위탁단체에 가입시켜 특정 |
|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 |
| 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이 |
| 아닌 사람에게 제1호에 규정 |
| 된 행위를 한 자 |
| 4. 제3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
|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5. (생략)

-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를 위반하여 <u>후보자가</u> <u>아닌 자</u>가 선거운동을 하거 나 제25조부터 <u>제30조의2</u>까 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 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 <u>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u> |
|-----------------------|
| 체나 사회자에 대하여 금전· |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 |
| 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
| 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
| <u>한 자</u> |
| <u>5.</u>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
| |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 |
| |
| 7. (현행 제5호와 같음) |
|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
| |
| |
| |
| |
| |
| 1 2705 |
| |
| <u>을</u> 할 수 없는 자 |
| |
| <u>을</u> 할 수 없는 자 |
| <u>을</u> 할 수 없는 자 |
| <u>을</u> 할 수 없는 자 |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u>예비후보자는</u> 제외한다.

1의2. ~ 5. (생략)

- 6.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위 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운 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7. (생 략) <신 설>
- 7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 에 불응한 자 8. ~ 13. (생 략) <신 설>

1의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7의2.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7 항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 를 개최한 자

<u>7의3</u>. <u>제30조의4제4항</u>-----

8. ~ 13. (현행과 같음)

②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 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